

[] 연금계좌 이체명세서

([] 가입자 보관용 [] 발행자 보관용 [] 접수자 보관용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가입자	이관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		③ 주소	
금융 기관	수관	④ 법인명(상호)	⑤ 지점명
	수관	⑥ 법인명(상호)	⑦ 지점명

I. 이체하는 연금계좌 명세	⑧ 연금계좌구분	[] 연금저축계좌 [] 퇴직연금계좌 ([] DC [] IRP [] 중소기업연금 [] 과학기술인연금)	
		[] 연금수령 개시 전 [] 연금수령 개시 후	
	⑨ 계좌번호		
	⑩ 가입일자		
	⑪ 납입기간 만료일		
	⑫ 연금개시일자		
	⑬ 이체일자		
	⑭ 연금 실제 수령연차		
		⑮ 이체연도 연금수령 여부 [] 여, [] 부	

II. 이체금액 명세	구분		이체액			
	과세제외금액	⑯ 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				
		⑰ 그 외				
	이연퇴직소득	⑱ 세액이연분				
		⑲ 전환분				
	⑳ 세액공제(소득공제)분					
	㉑ 운용수익		(+)		(-)	
	합 계					

III. 과세이연 정보	이연퇴직소득세	㉒ 세액이연분	
		㉓ 전환분	

※ 첨부 :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,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

위 내용과 같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연금계좌 이체명세서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이관 연금계좌 취급자

(인)

수관 연금계좌 취급자 귀하

작성 방법

1. ⑭연금 실제 수령연차란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, 최초 연금 개시 신청 후 이체하는 날까지 해당계좌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.
2. ⑮이체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연금수령 여부를 적습니다.
3. ⑯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란에는 이체하는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.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서 인출한 금액에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⑰그 외란에는 ⑯ 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 외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.
5. ⑱세액이연분(이연퇴직소득)란과 ㉓세액이연분(이연퇴직소득세)란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세 징수를 이연한 퇴직소득과 해당 미징수한 퇴직소득세를 각각 적습니다.
6. ⑲전환분(이연퇴직소득)란과 ㉔전환분(이연퇴직소득세)란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46조의2에 따라 소득이연퇴직소득에서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과 미징수한 퇴직소득세를 각각 적습니다.
7. ㉚란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2013년 1월 1일 전에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.
8. ㉛란에는 이체하는 총 금액에서 ⑯ ~ ㉚란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의 값이면 (+)란에, 음의 값이면 (-)란에 적습니다.